

1. 개정이유

산지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평균경사도조사서를 포함하도록 하고,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, 산지전용 등을 위한 복구비의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정비하여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을 유도하고, 별지서식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660제곱미터 미만 산지전용 신청서류에 평균경사도조사서 포함
(안 제10조제2항제1호아목, 안 별지 제3호서식)

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다목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에도 평균경사도를 허가기준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에도 이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조문 및 서식 정비

나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 마련(안 제20조 제1항·제2항·제5항·제6항, 별지 제10호의2서식·별지 제10호의3서식·별지 제11호의2서식·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)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을 위한 근거 및 관련 서식 신설 등 절차 마련

다.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 (안 제39조)

산림청장이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

라. 복구비 납부기한 연장 허용(안 제40조제3항부터 제8항, 별지 제38호의3서식 신설)

복구비를 납부기한 내 예치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치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서식 등 마련

마.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정비(안 별표 6)

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 등을 위해 복구지 내 식재수목의 유지관리계획 수립, 비탈면 녹화 등에 대한 기준 등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정비

바.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인 제출서류 완화(안 별지 제7호의2서식)

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설치조건·기준과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신청하는 제출서류에서 표고조사서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4. 4. ~ 5. .)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영 제8조제4항에 따른”을 “영 제8조제4항 및 영 별표3의3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아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(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)이 660제곱미터 미만인”을 “제출한 경우와 영 별표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중 산지의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3제2항제7호 중 “전용하려는”을 “일시사용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“문화재·전통사찰”을 “국가유산·전통사찰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산림청장등이 영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⑤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납부영수증의 분실 등을 이유로 납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확인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.

⑥관할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확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.

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고려하여”를 “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제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에도”를 “제6항에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7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③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비 예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복구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에 예치 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

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관할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 예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별표 1의3 제6호3) 중 “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”을 “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골프장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3호다목 전단 중 “1미터”를 “1.3미터”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없어야”를 “없도록 하기 위해 비탈면 및 소단에 중·횡배수로, 산마루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호 자목 중 “수종으로”를 “수종 및 주변 산림식생과 유사한 수종으로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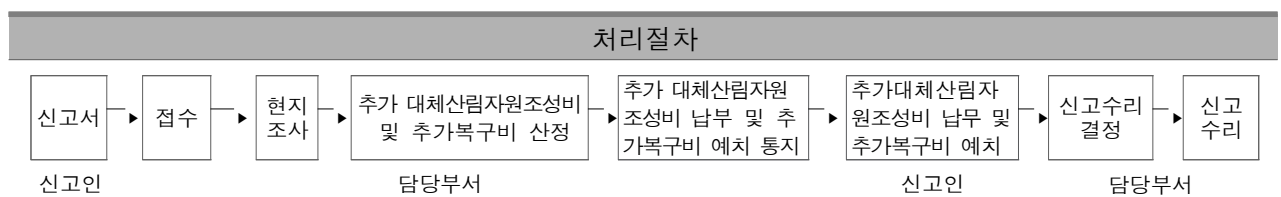
차.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탈면 녹화를 위해 덩굴류 식재 시 식생유도선 등 등반보조시설을 설치하고, 복구지내 식재한 수목
· 초본류· 덩굴류의 안정적 활착을 위해 관수, 시비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카. 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비탈면 녹화 시 토석채취지 주변 주요 조망점에서 가시가 집중되는 상층부의 가시민감지역은 비탈면 조기녹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차폐공법·특수공법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,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

제1호아목 중 “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(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)이 660제곱미터 미만인”을 “제출한 경우와 영 별표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중 산지의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

별지 제5호서식 제6호 중 “「산지관리법」 제37조제2항”을 “「산지관리법」 제37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,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 중 “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(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)이 660제곱미터 미만인”을 “제출한 경우와 영 별표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중 산지의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아목 중 “표고조사서”를 “표고조사서(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 사목 중 “전용하려는”를 “일시사용하려는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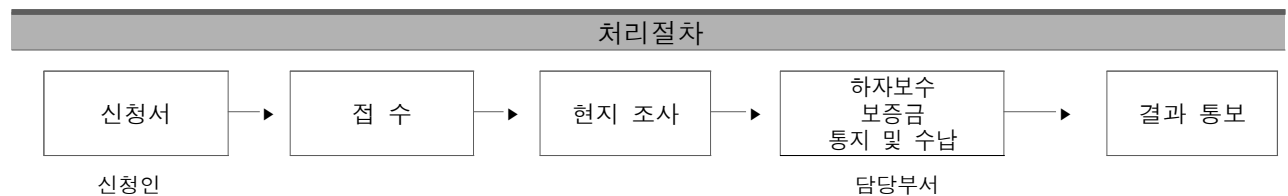
별지 제7호의5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0호의2서식, 별지 제10호의3서식,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6호서식 중 “「산지관리법」 제37조제6항”을 “「산지관리법」 제37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42호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

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6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나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허가나 지정을 받은 광물의 채굴·토석채취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(변경의 경우에는 확대된 채취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).

산지전용 [] 허가
[] 변경허가 신청서

(앞쪽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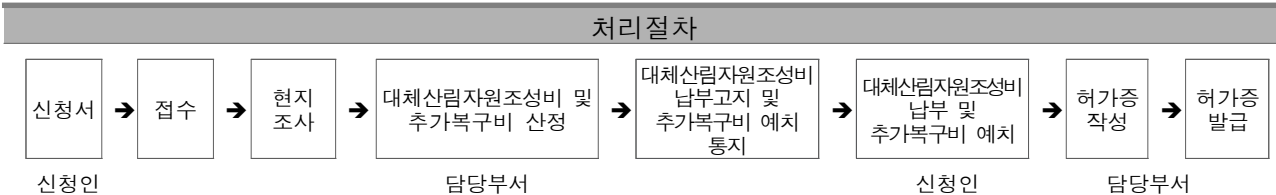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25일				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				
	주소	전화번호							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							
산지 소유자	성명	생년월일							
	주소	전화번호							
전용대상 산지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			
				계	임업용 산 지	공익용 산 지	준보전 산 지		
부산물 생산현황	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		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			토석			
	나무의 종류	본수	나무부피	나무의 종류	본수	나무부피	계	석재	토사
		본	㎡		본	㎡	㎡	㎡	㎡
전용목적				전용기간					
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	[] 허가 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항) []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처분 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2항제1호) ※ 해당란에 √ 표시						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		사 유			

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[]허가 []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귀하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
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* 첨부서류,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, 수수료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: 뒤쪽 참조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산지전용(허가·신고) [] 협의 [] 변경협의 요청서

(앞쪽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	
협의 구분	[] 산지전용허가	[] 산지전용신고			
협의요청기관의 장					
산지전용 목적					
근거 법령					
전용대상 산지	소재지	번지 외 필지			
	구분	계(㎡)	보전산지(㎡)		준보전산지(㎡)
			임업용산지	공익용산지	
	계				
	국유지				
	공유지				
	사유지				
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	[] 허가 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항) []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처분 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2항제1호) ※ 해당란에 √ 표시		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유		

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4항·제15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(허가·신고) []협의 []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
국립산림과학원장,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* 첨부서류, 수수료, 유의사항: 뒤쪽 참조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산지일시사용 []허가신청서 []변경허가신청서 []기간연장허가신청서

(앞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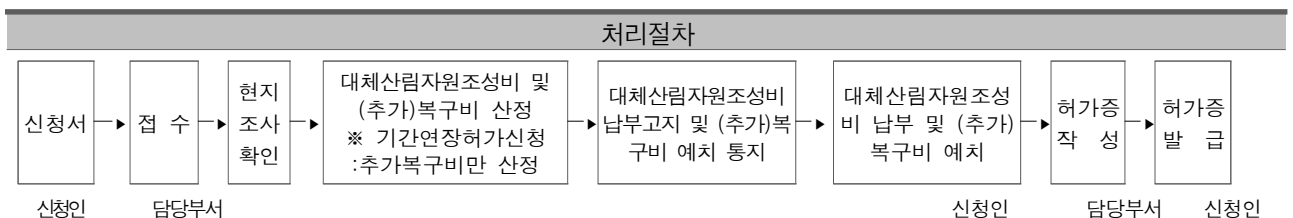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25일 *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	
산 지 소유자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일시사용 산지내역	소재지	지번	지목
	면적(㎡)		
	계	임업용 산 지	공익용 산 지
	계	준보전 산 지	
일시사용 목 적			
일시사용 기 간	당초(신규)		변경
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	[] 허가 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항) []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처분 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2항제1호) ※ 해당란에 √ 표시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 유

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·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
이 산지일시사용 []허가 []변경허가 []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

* 신청인 제출서류,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, 수수료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 유의사항 : 뒤쪽 참조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산지일시사용 [허가·신고] []협의요청서 []변경협의요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30일
협의 구분	[] 산지일시사용허가 [] 산지일시사용신고			
협의요청 기관장				
산지일시사용 목적				
근거법령				
일시사용 산지내역	소재지	번지 외 필지		
	구분	계	보전산지(㎡)	
			임업용산지	공익용산지
	계			준보전산지(㎡)
	국유지			
	공유지			
	사유지			
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	[] 허가 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항) []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처분 후 납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2항제1호) ※ 해당란에 √ 표시	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 유	

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 사용 [허가·신고] []협의 []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* 첨부서류, 수수료, 유의사항: 뒤쪽 참조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

납부	성명	생년월일						
의무자	주소	전화번호						
부과 내용	사업명	허가용도 또는 면적 (㎡)	산지·지역 구분	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근거				납부 예상액 (원)
				단위금액 (원)	공시지가 (원)	감면대상		
						요건	비율	

* 부과금액 계산방법 = 허가면적 X (산지·지역별 단위금액 +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) X 감면비율
** 단위면적당 금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기준 산림청고시에 따름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귀하께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위와 같이 산출하여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및 에 따라 미리 알려 드리니,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(첨부서류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,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·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- 가. 제출 기관 :
- 나. 제출 주소 :

아울러,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, 징수금액은 「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. 부과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,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

납부 의무자 귀하

첨부서류	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항목	통지 내용	의견

<그 밖의 의견>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성명	납부자와의 관계		
	주소	전화번호		
	확인서 용도			
납부사항	납부자	성명 (법인명, 대표자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	주소		
	소재지			
	사업명(목적)			
	면적(㎡)			
	납부금액(원)		납부일자	

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확인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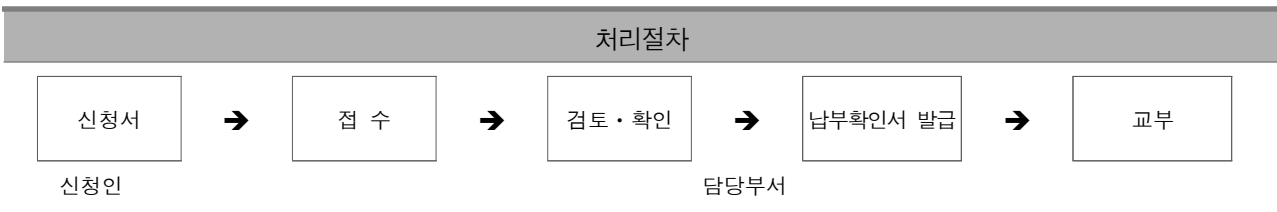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
		없 음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확인서

발급번호		발급일	
신청인	성 명		납부자와의 관계
	주 소		전화번호
납부자	성 명(명칭)		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
	주 소 (소재지)		전화번호
사업명			
부과현황	소재지		
	면적(㎡)		
	금액(원)		
납부현황	납부일자		
	납부액(원)	(당초납부액: , 환급액:)	
특이사항	명의변경		
용도			※ 기록된 용도 외는 사용할 수 없음

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직인

복구비 납부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위치·면적			
허가신청자	성명	생년월일	
(신고자)	주소		
복구비	이번에 예치할 금액	원	
예치 명세	기 예치총액	원	
	예치총액	원	
신청사항	연장사유		
	연장기간		

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첨부서류	복구비 납부재원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			
신청서	→	접수	→
신청인		검토·확인	→
		납부기간연장 결정	→
		납부기간연장 통지	→
		복구비 납부	신청인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토석채취허가 현황

단위(면적: 천㎡, 수량: 천㎥, 금액: 천원)

구분	허가현황						
	건수	개소수 (채취장)	면적	수량	채취실적	매각대금	복구비에치액
누계							
신규							

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

단위(면적: 천㎡, 수량: 천㎥, 금액: 천원)

일련 번호	토석 구분	주된 행정 처분	허가(신고) 현황								
		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수량	채취 실적	허가 기간	수허가자	복구비 예치액
계											
1											

※ 작성요령

1) 누계: 해당 연도말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허가현황, 해당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2) 신규: 해당 연도에 신규로 허가한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)	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.	제5조(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)	영 제8조제4항 및 영 별표3의3에 따른-----	-----.
제10조(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)	① (생 략)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1.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~ 사. (생 략) 아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(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) 1부. 다만,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<u>전용하려는</u>	제10조(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)	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	1. ----- -----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			----- 영 별표4 제2

산지의 면적(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)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
1) ~ 3) (생략)

자. ~ 타. (생략)

2.·3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제15조의3(산지일시사용신고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6. (생략)

7.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)

호다목의 세부기준 중 산지의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-----

-----.

1) ~ 3) (현행과 같음)

자. ~ 타. (현행과 같음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3(산지일시사용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--- 일시사용하려는

8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문화재·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, 기념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

5.·6. (생략)

⑦·⑧ (생략)

제20조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) <신설>

<신설>

8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국가유산·전통사찰-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) ①산림청장등이 영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① · 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39조(복구비의 산정기준)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③ · ④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
⑤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납부영수증의 분실 등을 이유로 납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확인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.

⑥관할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확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.

제39조(복구비의 산정기준) -----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-----

-----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복구비의 예치시기·절차 등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·④ (생략)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

제40조(복구비의 예치시기·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비 예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복구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에 예치 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관할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 예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·⑥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
⑥제5항-----

가산한 기간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4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⑦ 제6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⑦ 제6항에도 -----

-----.

⑧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⑨ 제8항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